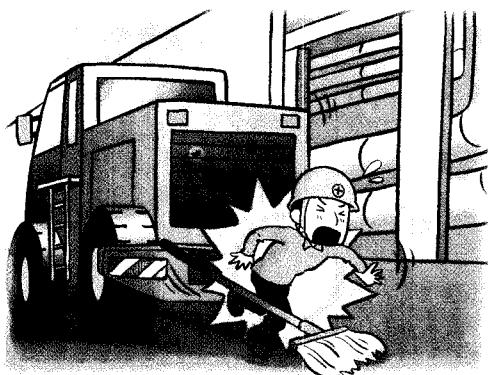


»»» 슬러그 이송 작업 중 페이로더와 충돌

업종	제강업연
기인물	페이로더
생산품	압연
재해유형	충돌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



1. 재해발생개요

제강부에서 청소 작업하던 피재자가 사무실 청소를 위해 청소용구를 가지고 제강부 전기로 3호기 옆에서 세척 후 사무실로 가기위해 걸어가고 있는 중 페이로더 운전자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피재자와 충돌,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제강부에서 청소 작업하던 피재자가 사무실 청소를 위해 청소용구(대걸레)를 가지고 제강부 전기로 3호기 옆에서 세척 후 사무실로 가기위해 걸어가고 있는 중 타 회사의 페이로더운전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후진하면서 피재자를 치어 피재자가 페이로더에 협착되어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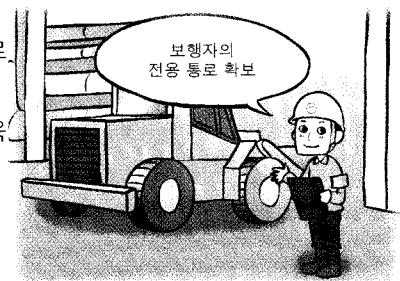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보행자의 전용 통로 미확보
- (2) 차량계건설기계(로더) 작업 경로내 접근 금지 표시 부착
- (3) 페이로더 운전자의 전, 후방 주의의무 불이행

나.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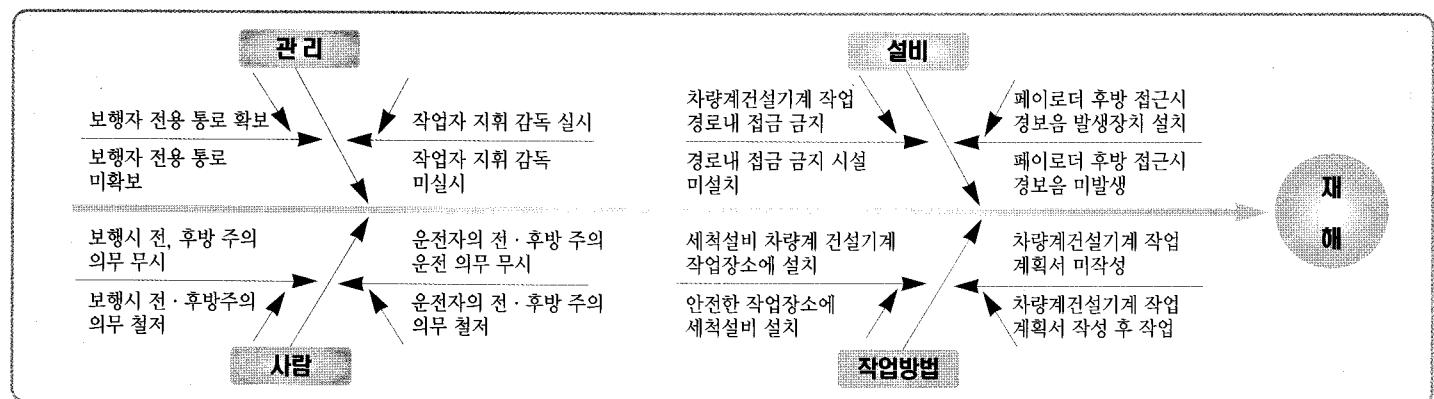
- (1) 보행자의 전용 통로 확보
- (2) 차량계건설기계(로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경로내 접근 금지 표시 부착
- (3) 근로자 보행 시 전방, 좌우, 주의 확인 안전교육 실시



4. 법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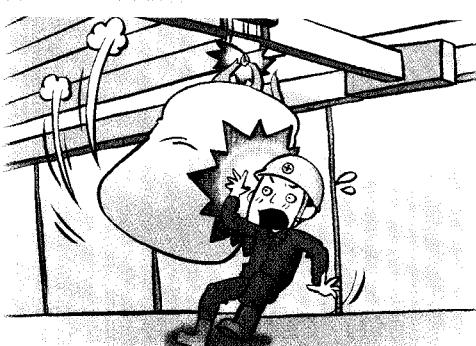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주물사 모래백의 섬유로프 파단으로 낙하한 모래백에 협착

업종	금속제품 제조업
기인물	주물사 모래백
생산품	자동차 부품
재해유형	낙하
피해정도	인적 물적



주물사 모래백
자동차 부품
낙하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피재자가 주물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천정크레인으로 주물사가 채워진 모래백(톤백)을 막싱기 호퍼 상부로 이동시킨 후 모래백 하부의 묶인 부분을 푸는 도중 모래백의 섬유로프가 찢어지면서 모래백이 피재자에게 낙하하여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주물사가 가득 채워진 주물사 모래백(톤백)을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막싱기 호퍼 상부로 이동 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주물사 모래백을 크레인에 걸어 놓고 모래백 하부의 묶인 부분을 푸는 작업에서 크레인의 흙에 걸려져 있던 모래백의 섬유로프가 찢어지면서 모래백이 피재자에게 낙하, 막싱기 호퍼와 주물사 모래백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섬유로프가 손상된 모래백(톤백)의 사용 및 작업 점검 미실시
- (2)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 미작성
- (3)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지휘자 미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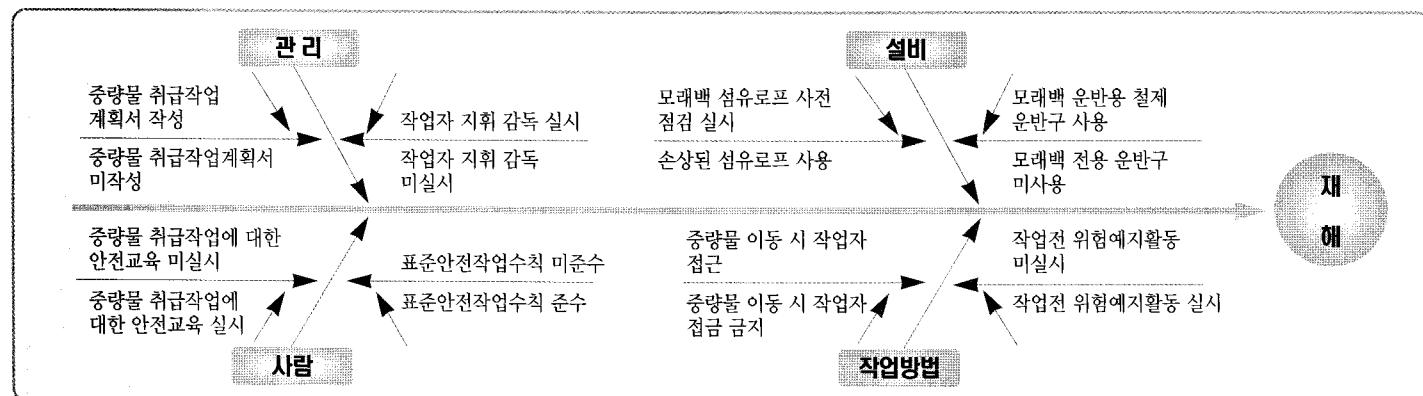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모래백(톤백)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철제 전용 운반구 사용
- (2) 막싱기 호퍼 위에 전용 운반구 및 모래백(톤백)을 옮겨놓을 수 있는 작업대의 설치
- (3) 중량물 취급 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4. 법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콘테이너 뒷싱 작업중 홀드에 추락

업종	항만용역업
기인물	바닥
생산품	항만운수부대사업
재해유형	추락
피해정도	인적 물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선박 접안 선박에서 뒷싱 작업중 피재자가 홀드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OO부드 작업장에서 선박 접안 선박의 뒷싱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개구부(110cm)에 빠지면서 9.4m 아래의 홀드에 추락, 몇 시간 후 동료 작업자가 발견하여 피재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수술 도중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추락방지용 안전대 미사용
- (2) 안전난간대(가설)미설치
- (3) 협소장소에서의 위험 예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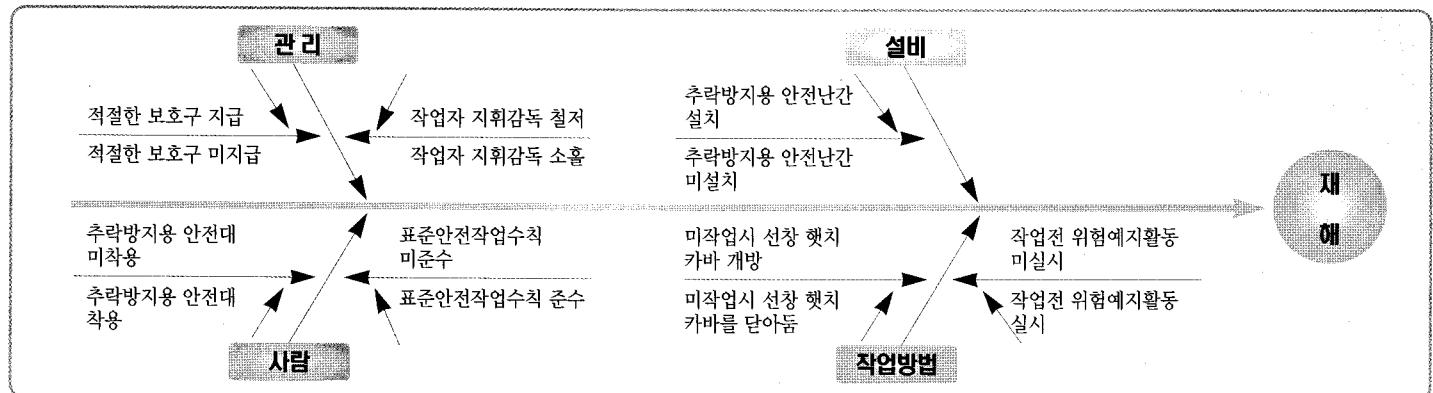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추락예방을 위한 가설 안전난간대 설치
- (2) 안전대 착용 난간대에 걸고 작업
- (3) 미작업 중인 홀드 햇치 커버는 닫아둠

4. 법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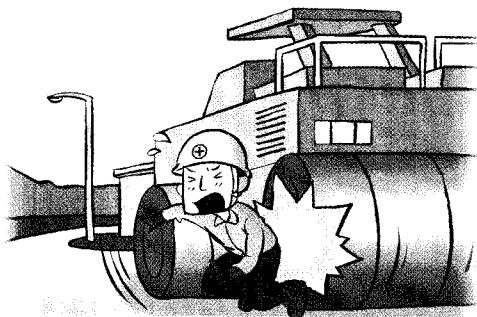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인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도로 포장작업중 후진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협착

업 종	건설업
기 인 물	로울러
생 산 품	협착
재해유형	도로 포장
피해정도	인적 물적
사망 1명	-



1. 재해발생개요

도로개설 현장에서 피재자가 피니셔를 사용한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작업 과정에서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세립아스콘으로 수정작업 하던 중,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깔려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피재자를 포함한 포장공 3명은 피니셔(Asphalt Finisher) 장비의 후면 및 측면에서 포설된 아스콘을 정리하고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던 중, 다짐작업을 하던 타이어 로울러(15Ton)가 후진하면서 피재자가 타이어 로울러 측면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로울러에 깔려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작업지휘자 미배치
- (2) 유도 및 신호수 미배치
- (3) 운전자의 운전미숙

나. 예방대책

- (1) 작업지휘자 배치 후 작업
- (2) 유도 및 신호수 배치 후 작업
- (3) 로울러 운전자의 안전교육 철저

4. 법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